

보건복지가족부, 선택진료제도 개선 착수

강경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용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선택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환자의 의사선택폭을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시·도를 통해 제출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¹⁾.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분석결과와 개선방안이다.

2008년 6월말 현재,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고 선택진료를 할 때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377개)의 8.9%인 212개²⁾로서, 2005년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는 2개소가 증가된 것이나 비율은 6.8%p 떨어진 수치이다.

2007년도 선택진료수입은 총진료수입의 6.5%인 8,977억원으로 2004년도 4,368억원(6.9%)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진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종별로는 전문요양기관이 5,940억원으로 총선택진료비용의 66%, 종합병원이 2,717억원으로 30%,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212개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26,223명으로, 이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0,843명(41.3%),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74.9%인 8,124명이다. 진료과목 중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는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97개 과목(84개 병원)이었다.

한편,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6개 기관이었으며, 이에 대해 80% 이하로 조정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온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1) 의료법 제46조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요양기관 43개(100%), 종합병원 81개(29.8%), 병원급 88개(4.3%)임. '05년 대비, 전문요양기관은 1, 종합병원은 3, 병원은 11개소가 각각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은 5, 치과병원은 6개소가 각각 감소하였다.

문제점에 대하여,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선택진료의 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비임상진료의사를 포함하여 선택진료 의사 범위(재직의사 80%)를 지정하던 것을 비임상진료의사를 제외하여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 중 80% 이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비선택진료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가 최소 1인 이상 되도록 하여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기능이 미흡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 관련 정보를 통계·관리토록하고, 선택진료제 실효성 확보 및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의 규정 준수를 강행하기 위한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환자의 의사선택폭을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이다. 

표 1.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개선사항	주요내용
선택진료의사의 범위	재직의사 80%로 정함. 비임상진료 의사인 연구, 예방의학, 파견중인 장기유학인 의사 제외
진료과목	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1~3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선택진료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통계를 관리, 선택진료제 실효성 확보 및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규정, 시정명령 등 신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09.23)